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502

발의연월일: 2022. 7. 18.

발 의 자:류성걸·정운천·최승재

성일종 • 박수영 • 서일준

배준영 • 박정하 • 조은희

권성동 • 이인선 • 김상훈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각각 10%, 12%의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해 오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서민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현행 월세 공제 기준금액과 공제율, 공제한도가 각각 지난 2014년과 2017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총급여액 7천만원을 8천300만원으로, 5천500만원을 6천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비율을 총급여액 8천3 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2, 6천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각각 상향하며,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도 75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90만원 인상하여 제도

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7조제2항 및 제95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중 "7천만원"을 "8천300만원"으로 한다.

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7천만원"을 "8천300만원"으로, "6천만원"을 "7천300만원"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12"로, "5천500만원"을 "6천100만원"으로, "4천500만원"을 5천100만원"으로, "100분의 12"를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750만원"을 "84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생 략)	대한 소득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②
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	
액이 <u>7천만원</u> 이하이며 해당	<u>8천300만원</u>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	
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	
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	
4항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	
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	
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	
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	

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 다.

③ ~ ① (생 략)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 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 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 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 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 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 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 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 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 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 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
제) ①
<u>8천300만원</u>
<u>7천</u>
300만원
<u>100분의 12</u>
<u>6천100만원</u>

는 종합소득금액이 <u>4천500만원</u>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u>100분의 12</u>]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u>750</u>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u>5천100만원</u>
100분의	<u>15</u>
	<u>840</u>
<u>만원</u>	
②・③ (현행과 같	음)

②·③ (생 략)